

고성군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841호)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2. 27 | 고 성 군 수 |
| 나. 회 부 일 자 : 2004. 3. 9 | |
| 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4. 3. 18 | 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 |

2. 개정이유

- 고성군포상조례중 포상대상에 포상범위를 생존자뿐만 아니라 사망자로 확대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사망자의 공적도 포상대상에 포함(안 제2조)
- 포상대상자가 사망 등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명시(안 제2조의2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포상조례중 사망자의 공적도 포상대상에 포함하여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등 입법 필요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
- 정부표창규정(대통령령 제15004호) 제2조 표창대상에 사망자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제18조에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을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가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음.

- 2004년도 정부포상 및 장관·도지사포상업무지침 7페이지 국민포상대상에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자로서 사망자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있고, 동지침 17페이지에 천재지변, 화재진압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사회 전체의 귀감이 되는자, 생전에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교육·학술 발전 등에 큰 공을 세워 국민적 존경과 덕망을 겸비한 지도적 인사 등을 대상으로 추서 규정이 있는 점을 미루어볼때, 사망자의 공적도 포상대상에 포함하여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 고성군민상도 적용이 되는지?
- 답 : 고성군민상은 별도 조례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적용됨.

6. 토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4. 3. 1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